

아키비스트의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김 기 석*

1. 머리말
2. 기록관리 전문가의 역할과 사명
3. 한국 기록과학의 개척
4. 외국의 양성 사례
5. 맺음말

부록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의 운영 방침과 교과과정

1. 머리말

1999년 1월에는 관심있는 학자들과 해당 행정기관 실무자간에 수년간 지속된 공동 노력 끝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2000년부터 국가기록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1999년은 국가기록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기록관리실장

주요논저 : 「교육역사사회학」, 서울 : 교육과학사, 1999 ; 「한국근대교육의 태동」, 서울 : 교육과학사, 1999 ; 「외국 대학사고의 사명과 기능 : 현지 조사 결과보고」, 서울대학교기록관리실, 1999

관리의 원년이 되는 셈이다. 비록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록법」의 제정과 공포는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기록관리정책이 실현되는 법률적 근거가 제시되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유례없이 독특한 기록문화전통을 유지하던 중 격변하는 근대사의 와중에서 그것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우리의 기록문화전통을 새롭게 부흥시킬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령제정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서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나 방향제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간 행정기구의 현장에서 문서관리를 담당해온 실무자의 시각과 관행이 더 크게 반영되었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현행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꼼꼼한 검토는 이 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법 제정과정이거나 기록관리체제상 국가기록의 중앙집중화, 국가기록에 대한 집중관리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그 만큼 지방 기록관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기록관리 영역과 폭이 크게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 「기록법」은 원래 국가기록에 대한 종합적 관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어떠한 구조와 성격을 갖출 것인가에 관해서는 각계에서의 의견이 수렴될 필요가 있다. 자칫 이 법령이 ‘정부기록보존소 강화법령’의 성격을 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 조항의 개정과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문화의 부흥이라는 과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관련 법령의 제정이 필요조건이라면 기록관리 전문가의 양성은 충분조건이 된다. 그러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제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와 정리해야 할 쟁점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기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구를 위시하여 지방 행정기구와 중앙 행정기구 부속기관을 포함한 각 행정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 배

치될 전문요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물론 기록관리 전문가의 양성은 「기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기록관리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기록법」의 제정은 국가가 이른바 기록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선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학, 사회단체, 기업, 병원과 같은 기타의 전문기관에서의 기록관리와 그 전문가의 양성의 문제는 정부와 학계,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관련 학계에서는 「기록법」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기록문화 부흥의 근간이 되는 전문가 양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왔다. 그 결과 대학원의 독립된 학과로 기록과 학과를 개설하여 석사와 박사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우선 시급히 요청되는 전문요원을 충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록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이 방안이 正道이기는 하나 상당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대안으로 최소한 대학별로 관련 학과간의 공동 노력으로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을 운영하자는 것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99년 목포대학교를 시발로 몇몇 대학에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기록관리학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기록관리학 석사의 배출 시기와 법령 시행 이후 전문요원 배치 시기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예상되었다. 법령 시행 시기는 2000년으로 미리 정해졌으나 협동과정 석사가 배출될 시기는 2001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시차 이외의 문제로는 양성의 규모로서, 예상되는 전문요원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졸업생을 단기간에 충분히 배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에 관련된 장·단기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도 앞으로 독립학과 개설을 목표로 하되 당분간은 협동과정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1999년 4월 개최된 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 석상에서도 전문가

양성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¹⁾ 심포지엄 석상에서 법령제정의 실무 작업을 이끌어온 정부기록보존소 소장은 전문가 양성문제에 대하여, 대학원 기록관리학과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2000년 법률 시행에 의해 파생된 “단기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원 형태의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²⁾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연구원은 명지대학교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이하 교육원)을 설립하였다.

협동과정의 개설과 교육원의 설립에서 가장 핵심적 과제는 교육과정의 편성이다. 외국과 같이 기록관리 전문가 단체가 제정한 표준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원은 물론 각 대학마다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형 표준 교육과정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조만간 전문가들의 공동노력으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아카비스트 양성과 관련한 몇 가지 과제와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기록관리 전문가의 역할과 사명

건국 50년간 국가 정책에서 잘 보아왔듯이 법령 정비, 정책 수립, 기구와 조직 설치 등과 같은 형식 요건의 충족만으로 국가기록관리능력을 발

1) 이 글은 학술대회 석상에서 “기록관리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필자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 당시 주제는 유지하되 그 이후의 시행령 확정 시기까지의 사정을 반영하였다. 이 글을 검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준 서울대 대학기록관리실 이원영 평가위원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정혜경 사무국장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남아 있는 착오는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2) 김선영, “공공기록물관리법안의 의미와 전망”, 국가기록보존관리 현실과 미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심포지엄 자료, p.36

회할 수는 없다. 최종적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한국의 교육은 교사의 질이, 한국의 법조계는 법조인의 질이 좌우하듯이, 국가기록관리능력은 결국 기록관리 전문가의 질에 달려있다. 궁극적으로는 각종 기록관에서 실무를 담당할 정예 기록전문가의 양성이 국가기록관리능력의 신장을 좌우한다.

그런데 새로운 전문 분야 교육과정 개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아키비스트(archivist, 기록관리 전문가)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그것에 기초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원리 및 기능을 체계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슷한 전문직종인 의·약학 분야에서 의사나 약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서구와 같은 의미의 훈련된 아키비스트가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현재 정부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기록관리 실무자들의 직무분석만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이 불가능하다. 직무분석 대신 아키비스트 특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일은, 단순 문서관리를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첫째, 아키비스트는 기록관리 업무를 통해서 국가기구의 기능과 역할 수행의 초석을 제공한다. 기록관리능력은 국력의 기초로서 안으로는 민주주의 원리에 철저한 국가 경영의 토대이며, 밖으로는 대외 교섭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현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가정보원은 과거 안기부로부터 거듭나기 위한 혁신방안의 하나로 ‘정보는 국력’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정보는 여러 형태의 기록에서 나온다. 그러나 기록은 역사 서술의 전유물만이 아니다. 사료(史料)는 기록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정보의 바탕이 되는 여러 형태의 기록- 문서, 구술증언, 목격담, 일기, 서한, 비망록, 수고(手稿), 사진, 녹음 및 영상테이프, 문서파일 등등-은 모두 국력의 기반이다. 국가정보가 눈앞에 닥친 국익과 안보를 좌우한다면,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 기록은 당장은 아니라 해도 불시에 국력과 주권을 좌우한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기록관리의 부실은 곧 국력의 훼손으로 직결된다. 한국이 ‘기록싸움’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을사늑약(乙巳勒約)³⁾과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⁴⁾, 최근의 한일어업협정 및 수정협정에 이르는 일련의 대일 교섭상의 연전연패의 전적⁵⁾이다. 소위 강대국이 외국과 협상할 때에는 관련된 쟁점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깊게 분석한다. 상대국 협상 대표의 경력과 배경은 물론, 심지어 그들의 취미나 식성(食性)까지도 파악한 다음 협상에 임한다.⁶⁾ 강대국의 강대함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3) 1905년 일제가 무력침략을 소위 ‘조약’ 형태로 가장한 것임을 알리는 고종황제의 親書는 韓國教育史庫 자료집 제1권, 『高宗황제의 주권수호외교, 1905-1907』, (서울대학교 韓國教育史庫, 1993)에 소개하였다.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알린 황제의 비밀외교교섭에 대해서는 拙稿, 『光武制의 主權守護外交, 1905-1907』, 海野福壽(編), 『日韓協約と韓國併合: 朝鮮植民地支配の合法性を問う』, 東京: 明石書店, 1995, 拙稿, 『光武制의 主權守護外交, 1905-1907: 乙巳勒約無效宣言 親書를 중심으로』, 이태진(편),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출판사, 1995년 참조.

4) 국교정상화 당시 중요 쟁점은 을사늑약이 불법이라는 시점이다. 이 회담에서 한국측은 시종 불법임을 주장하였고, 일본측은 패전이후 결과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측은 상대방에 대한 준비나 과거사 기록에 관한 심층적 검토 없이 회담에 임한 결과 일본을 침략자로 재확인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사과,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제기조차 하지 못하였다. 세계 어느 식민지-피식민지 국가간의 국교 수립 협상에서도 찾을 수 없는 ‘獨立 祝賀金’이라는 이름의 약간의 금전적 보상으로 침략에 대한 免罪符를 교환하였다. 이승만 정권 시절 선언된 ‘平和線’마저 자진 반납하였다. 이러한 굴욕적 협상의 핵심이 되는 소위 ‘金-大平메모’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마저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잃었다. 이는 해방 이후 우리 기록관리 관행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사례이다.

5) 이 외에도 협상 상대방과의 ‘기록 싸움’에서 열세를 면치 못한 사례는 재작년 換亂 위기에 대처하고자 IMF 당국자와 교섭하는 데에서 극명히 나타났다. 또한 환란 방지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국회 청문회가 ‘정치극’으로 마감한 것도 결국 관련 기록의 부실 때문이다. 부실한 기록으로는 환란의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국가 정책의 입안도 어렵다. 최근 쟁점으로 다시 부각된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 또한 기록의 부실로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될지 우려가 된다.

6) 대표적인 예는 미군의 기록수집 능력이다. 미국 軍政 당국자는 친미 성향 인사를 군정

기록관리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 기록관리 전문가는 기록문화 부흥의 전위대이다. 우리의 전통 기록문화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왔으나 개항기 이후 크게 와해되었다. 기록 전문가는 ‘법고창신(法古創新)’ 외에 ‘능변이지신(能變而知新)’의 사명을 담당할 역군이다. 현재 흔적만 남아 있는 전통 기록문화를 21세기 정보사회라는 사회 조건에서 새롭게 꽃 피울 민족문화 중흥의 근간이다. 기록관리 전문가는 투철한 ‘장인(匠人)’ 정신이⁷⁾ 몸 속 깊게 배어 있어야 한다. 전문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손과 발’로 뻗어 나가게 하고 특히 ‘마음’ 속 깊게 자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문가는 각기 맡겨진 기록 생산 현장에서부터 기록의 수집, 관리 평가, 보존 등의 일상 실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국 기록문화의 르네상스를 선도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록관리 전문가는 사료를 관리하는 기능인이나 기술자 이상이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 창조에 필수적인 과거의 기억을 오늘에 되살리는 정예 전문가이다. 밝은 조명이거나 각광도 없지

청 요직에 배치하기 위하여 한국 지도층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 기록을 분석하였다. 이 기록 중에는 30년대 미국 선교사가 선교 활동 중에 알게 된 한국인 인물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사상과 배경은 물론 酒量이나 심지어 충치의 정도까지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 기록은 한국 관련 다음 세 기록군에 산재되어 있다. 미 XXV 軍 군정기록(RG335), 북한 점령 시 노획문서(RG224), 한국전쟁 시기 극동군사령부 기록(RG57) 등이 그것이다.

- 7) 여기서 장인이란 영어로는 craftsmanship 독일어로 Meister에 가장 가까운 뜻이다. 필자는 기록 수집 중에 만난 아키비스트 가운데 장인 정신이 투철한 전문가를 많이 알게 되었다. 특히, 미국 국립국가기록관리청 軍史 담당 테일러(Taylor)씨는 80이 넘었으며 지금도 시시때때로 열람실을 어슬렁거리며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오직 한 길만 걸어온 분이다. 그 자신이 살아있는 ‘史庫’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한국 학자나 학생 가운데 그의 “결정적”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프랑스 아키비스트 또한 하늘을 찌를 듯한 직업적 자존심을 가지고 일한다. 그들의 도움 없이 역사학 논문과 저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기록에 도통한 전문가들이다.

만,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국력 신장에 헌신할 국가의 간성이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기록관리는 한 번 잘 해보면 그 자체의 매력 때문에 보상과 영광이 없어도 묵묵히 몸바쳐 일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의미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3. 한국기록과학의 개척

기록관리 전문가의 활동기반은 기록과학(Archival science)의 이론과 관행이므로, 전문가 양성의 전제 조건은 기록과학의 개척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기록과학이라는 학문이 정착 내지는 토착화되지 않았고 외국에서 그것을 전공하고 귀국한 연구자 또한 극히 적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기록관리 전문가나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양 근대 기록과학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학문을 무비판으로 수용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이다. 우선 그런 학문체계에 내포된 기록관리방안은, 다소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오래 전부터 견지해온 우리의 독자적인 기록문화와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기록관리 관행에 관한 한 우리가 서양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다만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조건에서 파생된 차이로 인해 독자적인 기록과학의 발달이 다소 늦어졌을 뿐이다. 후발 국가가 선발 국가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면 결국 스스로 문화식민주의, 구체적으로는 학문식민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공연한 기우가 아니다. 이 문제는 지난 1998년 중국 소주(蘇州)에서 열린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을 주제로 한 EASTICA 학술대회에서 이미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주제 발표자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기록과학과 교수는, 표현상 차이는 있으나 결국 “우리의 인증체제 내에서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라”는 논지를 폈다. 이는 넓게는 동양, 좁게는 한국의 고유한 기록 문화에 대한 무지와 독선의 반영이다. 학문의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나라 특유의 기록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학문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외국의 그것을 비판적으로 살펴 배워야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한국기록과학의 개척에 일조하게 될 소위 ‘근대 기록과학’이라 알려진 학문과 그것이 바탕이 되는 기록관리 관행을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 기록과학의 기원은 서양 기록문화를 토대로 한 기록관리 관행에서 비롯되었다.⁸⁾ 국제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록과학 또한 서구 문화유산이 이식된 후 자국의 사정에 따라 뒤늦게 발달된 것이다.

기록과학의 발달은 기록관의 변천과 직결되므로, 간략하게나마 서양 기록관의 발달사를 개관하며 기록과학의 특징을 찾아보자.

공공기록관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이다.⁹⁾ 혁명 입법으로 문서행정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이래 나타난 문서행정 관행

8) 근대기록과학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서는 기록과학의 고전 입문서인 Schellenberg, T. R., *Modern Archives*, 1963와 그것의 개정판인 Schellenberg, T. R., *The Management of Archives*, Washington D.C.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1988 참조

9) 공공기록관의 등장 이전에도 유럽에는 오랫동안 기록교 古文書館이 기능하였고 독자적인 기록관리 관행과 시설 및 전문가가 있었다. 유명한 5대 고문서관으로는 1) Madrid 국립역사고문서관 2) Lisbon 해외 역사고문서관 3) Alcala de Henares의 예수회 Toreol 관구고문서관 4) Rome의 예수회고문서관 5) Madrid 왕립역사한림원 등이 있다. 서양 기독교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傳敎를 담당한 천주교 신부 세스페데스(Gregorio de Céspedes)에 대한 연구가 있다. 쟁점은 그가 임진왜란 중군 신부로 참전하였을 때 조선에 입국하여 전교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다. 일본인 종군 신부는 소속 교단에 편지와 보고서를 발송하였으며 그것은 지금도 교회 부설 고문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원순,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 문제, 그리스도교와 겨레 문화연구회(편),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91 참조. 여기서는 근대 기록과학만을 언급하므로 교회 부설 고문서관의 문서관리 관행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과 그 관리 관행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¹⁰⁾ 이 특징은 오늘날 기록관의 기본 특질이기도 하다. 첫째, 전국 규모의 공문서 관리행정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1789년 국회 부속 기록관으로 설립된 프랑스 국립기록관(Les Archives Nationales)은 곧이어 국립 중앙문서관으로 발전하였고, 각 시도 기록관을 그 부속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현존하는 과거 문서자료 보존처 전체를 포괄하며 동시에 자료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구가 처음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둘째, 과거 문서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명시되었다. 국가의 책임은 비단 과거 예술 작품의 보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서의 보존과 관리까지 포괄한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기록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일반 공개 및 열람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특징이 혁명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개방의 원칙이 등장한 것은 학술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반 시민의 재산과 기본권 보호의 필요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시민들에게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된 자료는 토지관련 자료였다. 그러나 개방 원칙의 확립으로 어떤 형태의 기록관이든 법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으며 소장 자료 또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공목적 사용을 위해 널리 개방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서양 기록관이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 중에서, 사용 중에 있지는 않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관이다. 여기서 일반 공개라는 기록관 설립 정신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 혁명 후 뒤따른 새로운 사회 변화의 결과로 기록관 소장 자료는

10) Posner, Ernst, "Some Aspect of Archival Development Since the French Revolution," M. F. Daniels & T. Walsh, *A Modern Archives Reader :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Washington D.C.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1984, pp.5-6

역사 연구에까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서구에서 등장한 민족주의와 그에 따른 민족국가의 등장이 그것이다. 서구 각국은 민족 고유의 주체성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민족사 연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역사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한 강력하고도 열정적인 운동은 그 동안 일반 시민의 근접이 불가능했던 “문서자료의 간행, 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 개방, 새로 발굴된 자료에 근거한 민족사 기술”에 주안점을 두었다.¹¹⁾ 이로써 기록관은 일반 시민의 법적 기본권 보호뿐만 아니라 민족사 연구의 기반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서구 각국은 프랑스 국립문서관을 거의 그대로 본 따 여러 형태의 기록관을 설치하였다. 지난 2세기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국립기록관으로 1)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립기록관(Rijksarchief), 2) 영국 런던에 소재한 공문서관(Public Record Office)과 3) 미국의 수도에 자리한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4) 러시아(구 소련)의 국립기록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에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문서보관 이론과 관행 및 시설의 발달은 20세기 들어서부터 괄목할만하게 발전하여 서양의 선례를 능가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자료의 보관은 대체로 개인이나 비정부단체(예컨대, 교회) 자체의 책임이었다. 1884년 역사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특별한 관심을 둔 미국역사연구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가 창설되고 역사적 인물의 개인문서(Personal Papers)와 수고(manuscript)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료 수집활동으로 주문서고(州文書庫)와 같은 공공문서 보관기관이 등장하였는데, 이 기관은 개인문서 뿐만 아니라 공공문서(Public records)를 수집·보존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11) Ibid., p.9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또한 미국사 연구를 위해 수고(手稿)와 같은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기록관리방법의 발달을 촉진시킨 것은 기록관리에 관한 지식의 체계화와 이에 따른 전문가 양성과정의 발달이다. 이들 전문가의 단체인 미국기록관리전문가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가 제안한 표준 석사 학위 교육과정에 따르면,¹²⁾ 기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 기록생산에 관한 지식 2) 기록과학 3) 보완 학문 4) 실습 5) 연구방법론 등 5개 영역의 전문지식을 가르친다. 기록관리를 위한 이론적 훈련의 중핵은 기록과학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다른 분야의 학문이다. 그중 기록과학이란 기록관리의 역사, 조직과 기구, 법령 등을 위시하여 기록관리직의 전문화 과정과 과학적 기록관리 방법을 의미한다. 요컨대, 자료의 '감식(鑑識), 획득, 수집, 보존, 정리 및 기술을 포함하여 참고서지 업무와 열람 행정 및 개방 정책' 등을 포괄하는 지식이다. 기록생산에 관한 지식이란 보존할 자료의 '생산, 보존, 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제반 환경과 여건'에 대한 지식으로 기록생산 기관의 법적 근거와 재정적 기반 등을 다룬다.¹³⁾ 종래에는 문서나 자료가 생산된 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연후에 관리에 착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아예 기록이 생산되는 순간부터 관리에 착수하도록 그 강조점이 변화되었다. 특히, 정보과학과 컴퓨터와 같은 전산공학의 발달로 기록보존 방법은 물론 그 관리의 대상과 규모 또한 더욱 확산되었다. 첨단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기록관리 전문가는 기록생산자에게 생산될 자료의 유지와 관리 및 전산처리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발달되었다. 지식의 체계화와 전문가 양성으로 기록관리 시설과 건물이 발전하였으며, 그 실체가 미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12) The Guidline for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for a Master of Archival Study Degree, The Standard Board,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June 5, 1994

13) Ibid.

기록관의 존재이다. 정부기관은 물론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에는 거의 예외 없이 기록관을 설치하여 자체가 생산한 자료는 물론 관련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가 수시로 분석되어 기관 활동의 기능 수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첨단 정보 공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 이외에 미국이 서양의 기록 과학과 관행을 앞설 수 있는 것은 비문서(non-textual) 기록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혁신적 기술과 기능의 개발이다. 그 중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기록이 구술기록으로 구술기록의 수집에 관한 한 미국은 또 서양의 그것에 비해 월등하다.¹⁴⁾

이처럼 학문의 발달에서는 후진국인 미국의 기록과학과 관리관행은 서양 여러 나라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상기록을 포함한 멀티미디어의 적극적 활용, 관리 대상 기록의 확대와 같은 혁신 방안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록 또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아키비스트 또한 미국 특유의 소위 ‘개척정

14) 컬럼비아대학의 구술사연구소(Oral History Research Office, Columbia University)

는 현재 수행 중인 연구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의 구술사 연구기관이다. 1948년, 구술사 분야를 개척한 네빈스 박사(Allan Nevins)에 의해 창설된 이래 광범위하게 구술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에 소장된 음성녹음테이프와 녹취문은 역사, 정치, 문화, 교육 등 각 분야 세계적 지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회고담을 담고 있다. 초기에는 미국 정치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아 중국, 중동 및 남미 자료 또한 상당하다. 주제도 대중문화, 사회운동, 사회복지 및 기업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 현재 연평균 200여 권의 구술사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술자료에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긴 개인의 生涯史, 회고담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나 경험에 한정된 짧은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7천여 권의 구술면접 녹음테이프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 테이프를 풀어 쓴 녹취문 기록은 700여 만 장에 달한다. 그간 소장된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연구 성과로 수백 편의 학위 논문과 500여 권의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소장 구술 자료 가운데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구술기록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고 푸에블로호 사건과 같은 휴전 이후의 군사적 충돌에 관한 구술 기록도 채록되었다.

신' 이 투철하여 미국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생산 또는 접근한 기록을 모두 수집하였다. 그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국이 관련된 기록이라면 그 항목은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1차 대전 이후 세계 열강으로 부상한 미국은 각종 국제분규나 여러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기록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고 있다.¹⁵⁾ 이처럼 미국에는 자국에 관련된 기록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에도 없는, 외국의 기록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였기 때문에 유럽의 상대 기관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군사력과 국부(國富) 외에 그 규모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기록과 그것의 관리능력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개항 이후 한국을 전공하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미국을 찾고 또 찾는 이유는,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방대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열람과 기록관리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항상 넓게

15) 예컨대, 미국 국립기록보존청 소장 기록 가운데 기록군(RG) 224는 미국이 참전한 국가에서 노획한 모든 기록의 집성이다.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패전국 독일 외무성 소장 비밀 외교문서를 포함하여 제3제국의 거의 모든 기록을 노획한 다음 모두 미국으로 이관하였다(독일은 나중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외교문서를 반환하여 갔다). 이 외에도 이 기록군 안에는 한국 전쟁 참전 후 평양을 위시한 북한 각 지역에서 노획한 방대한 기록도 포함하고 있다. 패전국 일본에 대한 간접 통치시기에 생산된 연합군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 흔히 줄여 GHQ/SCAP) 기록도 보존되어 있다(일본은 이 기록을 이전하기 위해 약 12년 계획으로 250만 볼 예산을 투입하여 “GHQ/SCAP 자료이전 사업”을 수행하였다. 전문 사서 4명을 미국회도서관에 상주시켜 자료이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전된 자료의 양은 약 3천만 장에 달한다. 마이크로피시 형태로 이전된 자료는 현재 일본 국회도서관 현대정치사자료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자료 이전에 대해서는 現代政治史資料室, 「日本占領關係資料の現況」 『國立國會圖書館月報』 第二四四號,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981, 7 또는 小川元, 「政治史料課所藏, 日本占領關係資料の概要」 『參考書誌研究』, 第三八號, 1990, 9 및 熊田淳美 「米國國立文書館所藏の日本占領關係文書について」 『國立國會圖書館月報』, 第一九三號,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988. 4 등 참조).

열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학자(교민 포함)가 한국학자들이 좀처럼 근접할 수 없는 선교, 외교 및 군 등의 기록을 열람하여 학계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경우가 많다.¹⁶⁾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실상 미국 소장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서양의 기록문화와 우리의 것을 비교할 경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결코 크게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귀중 자료의 집성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은 물론 프랑스보다 훨씬 더 오랜 전통과 시설 및 관리요원을 유지해왔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우리는 고려말 이래 사고(史庫)(또는 사각(史閣))를 세워 역대 실록(판각)을 보관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전통이 더욱 발전되어, 건국 후 충주와 서울 춘추관(春秋館)에 사고를 설치하여 태조, 정종 및 태종실록을 보관하였다. 그후 불의의 사고로 자료가 망실될 것에 대비하여 성주와 전주에 사고를 증설하였다. 실제로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사고가 모두 소실되자, 전주 사고 소장 자료를 다시 발간하여 춘추각, 오대산, 태백산, 마니산(정족산) 및 묘향산(적상산) 등지에 오대 사고를 설치하여 실록을 보관하였다. 그후 여러 차례의 외침과 전란으로 다른 사고 소장본

16) 한국 外交史의 초석이 되는 저서로서 해링턴교수의 알렌(Allen)박사 傳記(H. Harrin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 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 국내 번역으로는 李光麟(譯), 『開化期の 韓美關係 : 알렌 博士의 活動을 中心으로』(一潮閣, 1973) 참조) ;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Korean War :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Korean War :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개신교사로서 L.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Pyongyang 1929 이 저서의 번역본은 白樂準, 『韓國改新敎史』,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3 ; 교육사로서 Horace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Y. : International Press, 1926 참조.

은 망실되었으나, 장서각에 소장된 적상산본은 북한으로 이전되었고, 오대산과 정족산 소장본은 규장각으로 또 태백산(목판)본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처럼 사고가 여러 곳에 설치되었기에 귀중 자료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고뿐만 아니라, 1776년 정조에 의해 창설된 규장각은 실록 외에 역대 선왕의 어제(御製)와 어필(御筆)은 물론 우리 나라와 중국의 귀중도서까지 광범위하게 집대성하였다. 규장각 소장 도서의 망실을 염려하여 강화도에 외규장각을 지어 귀중 문서와 도서를 이중으로 보관하기도 하였다.¹⁷⁾ 최근 유네스코는 규장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달리 말하면, 조선시대 기록문화는 단지 조선시대만의 문화유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우리 기록문화 전통이 실상 세계적 수준임을 뜻한다.

사고나 규장각에서처럼, 귀중 문서와 도서를 집대성하고 관리하는 전통은 우리가 서구를 앞서고 있다. 물론 사고와 기록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고는 일반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기록관은 처음부터 자료공개가 원칙이었다. 기록관 자체가 프랑스 시민혁명 정신에 의해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또 기록관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 우리의 기록과학 전통이 취약하다. 선조들의 귀한 전통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계승·발전시키지 못한 점이나 근대 기록과학이나 그것의 물적 구성체인 기록관과 같은 외국의 좋은 관행과 시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데 소홀히 한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요컨대, 사고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기록과학의 발달이 지체되었다.

17)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군이 강화도 침략시 약탈한 도서는 외규장각 소장도서의 일부이다. 약탈해간 도서를 자신들의 국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저들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태도에는 다른 한편으로 남의 나라 것이나 귀중 문서와 도서에 대한 그들의 남다른 존경심과 보존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기록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한국기록 과학이 발전되어야 한다. 단순히 서양 근대 기록과학을 모방하면 우리 기록문화 전통을 현대 사회에 적합하게 발전시킬 기회를 사전에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¹⁸⁾ 이러한 사태가 기록관리학과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에도 마찬가지로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독자적 학문의 발달이나 기록관리 관행의 쇄신과 나아가 한국기록문화 창달의 기회는 상실하게 된다. 선결되어야 할 조건은 기록관리 관행에 대한 자기비하 또는 전통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극복이다.

국가기록의 보존과 활용 실태는 아직 열악하다. 우리 기록문화의 전통은 식민지 침략을 당한 이후에 점차 상실되었다. 즉 국가기록을 파기하거나 훼손하는 관행은 지난 100년 미만에 생긴 잘못된 습성이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식민지 지배와 건국 후 동족상쟁 및 정부 수립 후 반복된 권위주의적 정치 권력의 횡포아래 정부 관리는 물론 시민과 사회운동가들이 생존하기 위해 취한 임시 방편 행위였다.¹⁹⁾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정치 민주화가 이룩된 이후 시대가 크게 바뀌었

18)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를테면, 동의학과 서양의학간의 대립과 갈등이 그것이다. 중국이나 심지어 서양에서도 한의학과 양의학을 통합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東醫學 대학 및 대학원과 서양식 근대의학 기관인 의대나 대학원에서의 의학과 의술의 전달은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9) 주목할 만한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1930년 중반 '김산'으로 알려진 장지락이 중국 연안의 어느 동굴 안에서 미국인 여기자 님 웨일즈와 공동으로 구술기록을 만들었다. 기자는 그 구술기록을 사용하여 나중에 『아리랑』이라는 저서를 김산과 공동 명의로 간행하였다. 충실한 구술기록의 채록이 가능한 것은 장지락이 매우 특이한 형태로 자신의 투쟁기록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국 기록관리 관행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당안관과 당안학의 발달은 서양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다. 중국 기록문화 전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 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나중에 '大長征'으로 미화되었으나, 실은 국민당의 공비토벌 작전으로 참담하게 패전을 거듭한 시기에도 黨의 당안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 이제는 구시대 폐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 기록문화 전통을 복원하고 갱신할 시기이다. 새로운 시대의 대표적 특징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이다. 기록이 디지털 형태로 생산 또는 보존되고 멀티미디어로 바뀌고 있다. 이 영역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따로 없다. 누구나 창의적 사고를 한다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²⁰⁾ 전통 사고의 정신을 정보화 시대 정신과 접합시켜 독자적인 기록관리 관행을 수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록과학의 발달이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독자적 기록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학문이 조만간 학문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기록과학과 관련된 기존 학문 분야 어느 영역에서도 기록과학과 전공 개설과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문제에서 기득권이나 선점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동의(東醫)와 양의(洋醫)간의 뿌리 깊은 알력이나 갈등과 패권 경쟁은 의학의 학문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더구나 패권주의는 국민 보건에도 큰 피해를 준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더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다. 특정 학과의 기득권 경쟁에 대한 우려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 문제이다. 기록과학의 경우 역사학과 문헌정보학간의 긴장과 알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학문 분야간의 타협에 의한 독점적 연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록법」 시행령 제 40조와 같이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의 규정이 그 예이다. 1항에서처럼,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소지자

20) 현재 정부기록보존소 또한 기록전산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록관리실도 장기 사업으로 서울대 가상 대학사고(SNU Cyber University Archives)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학내 종합정보화가 추진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 작동할 경우 중요 기록은 관련자가 전자 결재한 즉시 자동 이관된다. 아울러 이미 수집된 각종 기록과 앞으로 수집된 기록을 모두 디지털 매체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국내외 어느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울대 관련 기록을 가상 공간을 통해 열람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의 전산관리에 대해서는 정혜경·김성식, 「해외소재 한국학관련 역사기록의 정보화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졸업 논문, 2000년 참조.

에 일차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기록관리학 이외의 전공을 인정하는 2항에서 오직 역사학과 문헌정보학 석사 소지자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전문요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인문과학은 물론 사회과학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소지자가 전문요원이 되는 길은 막힌 것이다.

이 조항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다. 국가기록의 범위나 내용의 특징으로 보면 인문·사회계는 물론 자연과학이나 공학계 전공자에게도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 검토에서 후술하겠지만, 특정 전공분야의 사람에게만 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미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 특정 전공 영역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출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안은 관련 학자들의 대동단결이다. 힘을 합쳐 전통 기록문화의 부흥과 서양 기록과학의 토착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업할 필요가 있다.

4. 외국의 양성 사례

국내에 기록과학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학문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미주 지역과 동양 지역에 한정하여 기록과학 전문 학자와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예시한다.

1) 미주 지역 양성과정

가. 미국의 기록과학 석사 표준 교육과정

미국의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은 대부분 각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

해 양성된다. 각 대학은 대학마다 특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으나 그 근간은 기록과학자와 전문가단체(SAA)의 교육과정연구 소위원회가 수년간의 논의를 통해 제시한 표준 교육과정안이다. 전문가 단체가 제안한 표준 교육과정은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표준 교과를 제시하였다. 세 영역과 교과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영역 1 : 기록 생성 관련 영역

미국 행정조직의 변천사, 미국 법제, 미국 재정체제

영역 2 : 기록과학

기록관의 역사와 기록관리 전문직의 법제적 근거와 성격, 기록과학(기록학 이론, 기록관리 방법, 및 기록관리 실제 등)

영역 3 : 보충 영역

보존학, 문헌정보학, 경영관리, 연구방법론, 역사 등 관련 학문

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기록과학 석사 교육과정

유럽을 제외한, 북미 지역에서 최초로 독립학과와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원의 기록과학 전공은 문헌정보학과 별도로 독립된 상태로 운영된다. 북미 지역의 기록과학 분야 ‘최초 최고라느’²¹⁾ 긍지를 가진 이 대학의 대학원 명칭은 ‘도서관, 기록 및 정보과학 대학원 (School of Library, Archival & Information Studies)’이다. 대학원 내에 도서관학과와 기록과학과를 따로 설치하되 상호 협동으로 두 분야의 정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 두 전공은 같은 대학원 소속으로 상호 협력하여 도서관 사서와 기록관의 아키비스트를 각각 양성한다. 도서관

21) 기록관리학과장인 Eastwood 교수의 구술증언, 1999년 7월 14일, 학과장실 면접

학은 자격 이수 과정이나 기록과학은 별도의 자격 이수 절차 없이 대학원 석사학위로 아키비스트 자격증을 대치하고 있다. 1년 2학기, 2년제 대학원으로 모두 48학점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48학점 중 9학점은 도서관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는데, 도서관학의 경우도 기록과학 관련 9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도서관학과 기록과학간의 상호 협조체제가 돋보이는 과정 운영 방법이다. 기록과학 전공 대학원생은 아래 열거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영역 1) 핵심 영역 (24학점)

기록물의 성격, 기록물 정리 및 기술, 행정기록, 기록물 수집, 캐나다 기록관리법, 기록의 접근과 열람, 기록관 제도와 기록전문직, 기록과학 연구

영역 2) 도서관학 관련 영역(9학점)

서지학, 열람과 조회, 기록관리 또는 전산기록관리

영역 3) 석사 논문 또는 추가 학점(15학점)

학위논문 작성 : 논문학점(12학점), 박물관학 또는 문화재관리(3학점)

대학원 학생들은 상기 과정을 이수하면서 관련 학과의 다른 과목수강을 권장한다. 이를테면, 구술연구방법, 박물관 교육(Museum Education) 등 다른 대학원 전공과목을 폭넓게 배우도록 하고 있다.

다. 호주의 에디스 코웬 대학원

호주에도 기록과학대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록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1년 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원격 교육형태로 대학원과정을 운영하는 에디스 코웬 대학원의 양성과정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 대학원은 2학기 1년 과정을

개설하였다. 학기 당 4 과목을 이수하되 모두 필수 과목만 개설하였다. 모든 학사과정 학과 졸업생에게 입학이 개방되어 있으며, 학사과정 3년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원격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을 위하여 가상 캠퍼스(Cyber Campus)를 열어 놓고 있어 등교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전 과목을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이수할 수 있다. 등교학생과 원격교육 학생간에는 졸업 자격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학기별 강좌는 다음과 같다.

제1학기 : 기록환경론, 보존과 수장(收藏), 정부기록과 문서, 기록사회학

제2학기 : 기록보존, 정보 관리, 전산기록 관리, 기업 기록, 기록관리 실습

이상의 전 과정은 전통적 강의 수강 형태나 가상 강좌 형태 어느 것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전 강좌는 이미 CD-ROM/Internet 형태로 동시에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강의 수강학생도 언제든지 가상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다.

2) 동북아 지역 양성과정

가. 중국의 당안학(檔案學)과 실무자 양성

중국의 국가 당안관(檔案館) 체제는 가히 세계적 수준이다. 중앙 기구는 물론 전국 각 성에도 당안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많은 수의 당안 관리요원이 매년 양성된다. 고등학교 수준에도 당안 관련 학교가 있다. 중국인민대학당안학원을 위시하여 여러 대학에 당안학과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대학원 수준에서의 양성과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강좌명 열거는 생략한다.

나. 일본

일본은 기록과학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직 없으며 자격증 인증 제도 또한 없다.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문부성 소속 국문학연구 자료관 사료관(國文學研究資料館 史料館)에서 매년 사료관리학 연수회를 시행한다. 평생 10년의 경우 19일간의 장기연수과정과 11일간의 단기연수과정을 시행하였다. 국내 기록관리 기관 종사자 누구에게나 개방되었으며 국비로 충당하여 수강료가 없고 이수 후 수료증을 수여한다. 장기연수과정의 훈련 내용은 다음 같다.

문서관 총론, 기록사료관리 1(총론 및 기록수집 관련 내용), 기록사료 2(기록의 정리와 기술 관련 내용), 기록사료관리 3(보존관리), 사료관리의 실제

이상과 같이 미주와 동북아 여러 나라의 기록과학 학자와 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우리는 외국 사례를 통해 다음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 교훈은 한국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이다. 첫째, 나라마다 생산된 기록의 성격 특성이 모두 다르며 이 특징이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기록 내용 또한 각국의 정치·법률·행정 체제와 자국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근대 기록조차 대체로 한문, 고어체(최소한 메이지(明治) 시기)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등의 여러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 기록 생산과정이 다른 만큼 양성과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처럼 최악의 여건에서도 기록문화 전통을 유지한 경우나, 첨단 컴퓨터공학을 활용하는 미국과 같이 독자적 학문과 양성방안을 확고히 수립한 나라가 있다. 이들은 기록과학의 출발지인 유럽 학문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셋째, 기록문화 전통과 관행은 사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대학원마다 양성과정에서도 차

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에도 기준으로서 표준 교육과정만을 제시하고 각 대학원의 여건과 특징에 맞게 유연한 구조와 체계를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넷째, 표준 교육과정은 개별 대학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 전체의 공동 책임아래 관련 학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개발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상에서 소개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이미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교육과정의 사례가 있다.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의 교육과정과 2001년도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이 여기에 해당한다. 양자 모두 미국의 표준과정 구성원리를 많이 참고하여 개발되었다.(서울대 교육과정은 부록 참조)

5. 맺음말

비록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국가경쟁력의 바탕으로서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확립과 그 실천이다. 「기록법」과 그 시행령의 공포와 같은 입법 조치 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종합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와대, 국회, 법원은 물론 중앙기구로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법이 정한바대로 반드시 기록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대학, 재벌, 시민 단체, 종합병원도 기록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기록보존소를 가칭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으로 승격시켜 국가기록관리에 합당한 권위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기록관리기관 현장에서 그 실천을 담당할 기록관리 전문가를 정예화 하기 위해서는 기록과학대학원을 독립된 대학원으로 설치하거나 독립학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기록과학 관련 전공 학자가

충분치 않으므로 잠정적으로는 각 대학별로 대학원 내 여러 관련 학과간에 공동으로 협동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독립학과이든 협동과정이라도 창설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할 점은 어느 학과도 기득권이나 선점권을 주장하지 않고 관련된 학과나 또는 관심있는 교수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학사과정에는 별도의 학과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법대와 의대는 독립된 학사과정을 설치하지 않고 전문 대학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기록과학 또한 마찬가지로 학사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종래 우리 대학 내에 존재해온 고질적인 권경쟁이나 패권 각축이 몇몇 학과간에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내부 분열이나 갈등은 근본적으로 채신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기록과학의 학문 발전은 그 뿌리부터 흔들린다. 더구나 학사과정이 설치되면 졸업생과 동창들이 학과에 대한 애착과 집단이기주의적 충성 경쟁을 벌일 것이 분명하다. 또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한 패권 쟁투가 벌어질 것이며, 이 학연은 졸업 후 업무 현장에까지 연장되어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적인 우려이며, 앞서 진술한대로, 법령 제정과정에 이미 그 일단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법 제정 이후에도 그러한 우려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기록과학은 물론, 그것의 실천과 관행의 확립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러한 병폐가 재발되지 않을 조건을 마련하고, 각 대학에서 학교 형편에 따라 대학원 협동과정이나 전문 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이 필요하다.

학과나 협동과정의 설립에서 핵심 과제는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발이다. 한국 현실에 맞는 표준 교육과정 시안을 작성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예, SAA의 표준 석사과정 교과편성)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기록문화 전통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교과를 광범위하게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 경쟁력 있는 한국 특유의 기록관리학을 발전시킬 전문가를 양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의학이나 법학과 마찬가지로, 기록과학 또한 전문직이므로 교육과정 개발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전문가협회(가칭 SKA : Society of Korean Archivists)나 또는 기록과학 관련 학회를 만들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전문가 단체의 조직에는 기록과학에 관심있는 학자와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졸업생이 그 중심을 이룰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훈련의 정도를 보면, 교육원 졸업생처럼 최소 1년간 기록과학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관련 학술논문을 작성한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들을 토대로 구성한 학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기록과학의 학문적 성격을 분명히 하며 그것에 바탕을 두어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과제 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문요원의 양성이다.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를 규정한 시행령 제40조 1항대로 협동과정에서 석사를 이수한 졸업생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직에 배치되기에는 아직 몇 년이 더 걸린다.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와 같은 경과조치를 둔다 해도,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를 협동과정 출신 석사 졸업생으로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에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임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40조 2항에서 규정된 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전문요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행정자치부가 지정 또는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양성기관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직 공무원 가운데 유사 직무를 수행해 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자치부 내 임시 양성기관에서도 전문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와 같이 민간기관의 활동과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조건에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전문요원 양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교육원과 같은 민간 또는 대학 부설

양성기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임시 양성기관이든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학자와 정부기관 내 실무자들간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다. 바로 그러한 연대의식과 책임감이 기록법의 제정을 이끈 힘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힘은 이후 기록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어 갈 추진력이기도 하다.

부록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전공의 운영 방침과 교과과정

■ 배경

서울대학교는 협동과정을 개설하기 위하여 인문대학의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와 사범대학의 교육학과와 역사교육학 그밖에 법대와 행정대학원 소속 교수들이 1999년 가을 한 학기 내내 공동작업을 하였다. 아래 교과과정은 관련 학과의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과제 책임자 : 권태억 국사학과 교수)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한 운영 방침과 교과과정이다. 작년 학내 사정으로 협동과정 과정이 개설되지는 못하였으나 금년 중 다시 추진하여 다음 2001년도 신입생을 뽑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표준과정 구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교과는 대체로 기록 생성관련 과목, 기록과학 관련 과목 및 보충 영역 교과로 구성하였다. 기록과학의 핵심 과목은 2학점 이하로 하였으며 기록 생산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과목은 3학점으로 하였다. 보충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로는 관련 학과의 교과 중에 학과별로 몇 과목씩 전공학점 인정 과목을 심의 결정하였다. 아래 교육과정은 학내 심의 과정에 회부하기 위하여 연구팀이 제안한 교과과정이 실제로 개설될 경우에 다소간의 수정 보완이 따를 것이다.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학사과정의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협동과정이라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원 인문학 전공자에 적용되는 이수 규정을 그대로 적

용하기로 하였다. 석사과정으로 개설 신청을 하였으나 장차 박사과정도 설치하고 나중에는 독립학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 운영 방침

(1) 과정 이수학점은 인문대 대학원의 타 전공과 마찬가지로 24학점으로 한다.

(2) 교과목 가운데, 전공필수로 규정한 <전산기록관리 개론>과 <기록관리학 개론>을 제외한 'A군 교과목'에서 4학점(2과목), 'B군 교과목'에서 6학점(2과목) 이상의 학점을 각각 취득하여야 한다.

(3) 12학점까지를 관련 대학(원) 또는 학과에서 개설한 대학원 교과목의 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단,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의 내규에서 열거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학사과정 과목을 6학점까지 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내규에서 열거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4) 교내 기록관리기관(대학기록관리실, 규장각 등)이나 정부 기록관리기관에서 실습을 하도록 한다.

■ 교과과정

구분	과목	학점 - 강의 - 실습	비고
A군	전산기록관리 개론	1-2-2	필수
	기록관리학 개론	2-3-0	필수
	한국의 기록관리체계	2-3-0	
	한국기록관리의 역사	2-3-0	
	기록자료 분석론	2-3-0	
	기록의 정리와 색인화	2-3-0	
	기록의 보존	2-3-0	
	기록정보서비스	2-3-0	
	기록관리실습	2-1-2	
	기록관리학 연습	2-3-0	
B군	세계기록관리의 역사 1	3-3-0	
	세계기록관리의 역사 2	3-3-0	
	고문서 연습	3-3-0	
	역사자료론	3-3-0	
	근현대자료론	3-3-0	
	한국법제사연구	3-3-0	
	헌법·행정법 기초	3-3-0	
	행정조직법 및 개별행정작용법	3-3-0	
	행정사	3-3-0	
	행정체계론	3-3-0	
	행정관리론	3-3-0	
	정보정책 및 정보법	3-3-0	
	정보체계론	3-3-0	
	정보자원관리론	3-3-0	
	기록관리학 특강	3-3-0	
	기록관리학 연구	3-3-0	

Some Thoughts on The Training of Archivists for Korean Records

Kim, Ki-Seok

This paper is to propose for some guidelines in making curriculum for the training of archivists for Korean records. This paper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revival of the culture of record-keeping tradition of our owns. Without it's revival, a blind introduction of archival sciences based on Western civilizations can be ended up another version of cultural and academic imperialism as such in the field of the record-management of Korean records. Rapidly growing information and computer technology of our owns must be incorporated in the making of archivist training programs. It proposes that the opening of archival science major as a department at the graduate school level is in the long run essential, yet that of an associate master degree program can be in real an alternative. A training of archivists is not just to produce of a technician but a crafts(wo)man who would be in the vanguard of the renaissance of the record-keeping culture in Korea.